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31일
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달호, 김재형, 김제리,
김화숙, 성흠제, 송재혁,
이광성, 이상훈, 이준형,
이현찬, 정진술, 한기영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가 지연되어, 감사에서 적발된 행정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, 위법한 사항이 방치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.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확정 시기를 상위 법령(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)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,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(안 제18조제1항).
- 나. 감사결과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18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제23조와 제24조로 하고,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, 징계, 문책, 경고, 훈계, 시정, 주의, 개선,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2조(감사위원회 규정)</u>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<u>제23조(준용)</u>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준용한다.</p>	<p><u>제22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 ①</u>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</u>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, 징계, 문책, 경고, 훈계, 시정, 주의, 개선,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③</u>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<u>제23조(감사위원회 규정)</u>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<u>제24조(준용)</u>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준용한다.</p>